

# 기초교양 대학원생 강의조교 (작은스승A, 강의조교A) 복무협약서

제1조(목적) 대학(원)장 이준호(이하 “갑” )과(와) 대학원생 강의조교 **홍길동**(이하 “을” )은(는) 다음과 같이 조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2조(복무기간 및 복무시간 등)

1. 복무기간 :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

### 2. 복무내용

- 학부 수강생 글쓰기 과제물(보고서, 서평 등) 지도 / 연구프로젝트, 심층읽기, 토론 등 지도
- 강의준비, e-TL 및 출결관리, 시험감독, 채점 보조 등 강의보조

3. 복무시간 : **주 10시간**

※ “을”의 학업·연구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주 10시간 이내로 권장하되, 대학 및 조교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

4. 복무일/휴일 : 매주 5일

※ 강의 보조 또는 수행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 혹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들 협의 하에 복무일/휴일 및 복무시간을 별도로 지정

## 제3조(금전적 보상)

- 지급금액 : 등록금 10%면제(장학금) 및 학기 당 360만원(인건비)

※ 등록금 10%면제는 재학생만 해당(연구생 및 규정학기초과자는 인건비만 지급)

- 지급월 : <1학기> 4월, 7월 / <2학기> 10월, 1월

- 지급방법 : “을” 명의 계좌 입금

※ 학기 중 교체할 경우 인건비는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 · 지급함

제4조(안전·보건 보호) “갑” 은 “을” 의 복무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·보건교육 실시,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, 해당 기계·기구·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·가스·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 ·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**제5조(인권·권리 보호)** “갑”은 “을”의 복무 중 “을”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조교 운영 책임자 등에게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**제6조(위반시 처벌·제재)** 본 협약서의 복무 조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“을”은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,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“갑”은 인권 센터 등 관계 부서의 직권 조사를 명하거나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.

**제7조(협약 중단·해지)** “을”이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8조(복무협약서 교부)** “갑”은 복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“을”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복무협약서를 교부해야 한다. 또한, “갑”은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교부하며, 교과목 담당 교수는 협약 내용에 따라 “을”의 복무관리 및 제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.

2020. 3.

(대학(원)장 또는 기관장) 소속대학(원) : 자연과학대학  
직위 : 자연과학 대학(원)장  
성명 : 이준호 (서명)

(강의조교(작은스승)) 소속대학(원) : 자연과학대학 (학과: 수리과학부)  
학번 : 2020-00000  
성명 : 홍길동 (서명)

교과목 담당 교수 : 소속 (수리과학부) 직위 (교수) 성명 (김OO) (인)

# 기초교양 대학원생 강의조교 [작은스승B, 강의조교B] 복무협약서

제1조(목적) 대학(원)장 이준호(이하 “갑” )과(와) 대학원생 강의조교 **홍길동**(이하 “을” )은(는) 다음과 같이 조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2조(복무기간 및 복무시간 등)

1. 복무기간 :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

### 2. 복무내용

- 실험·실습·연습 지도 및 실험보고서 작성 지도 및 피드백 제공 등
- 강의준비, e-TL 및 출결관리, 시험감독, 채점 보조 등 강의보조

### 3. 복무시간 : 주 5시간

※ “을”의 학업·연구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주 5시간 이내로 권장하되, 대학 및 조교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

### 4. 복무일/휴일 : 매주 5일

※ 강의 보조 또는 수행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 혹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들 협의 하에 복무일/휴일 및 복무시간을 별도로 지정

## 제3조(금전적 보상)

- 지급금액 : 학기 당 180만원(인건비)
  - 지급월 : <1학기> 4월, 7월 / <2학기> 10월, 1월
  - 지급방법 : “을” 명의 계좌 입금
- ※ 학기 중 교체할 경우 인건비는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 · 지급함

제4조(안전·보건 보호) “갑” 은 “을” 의 복무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·보건교육 실시,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, 해당 기계·기구·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·가스·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 ·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**제5조(인권·권리 보호)** “갑”은 “을”의 복무 중 “을”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조교 운영 책임자 등에게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**제6조(위반시 처벌·제재)** 본 협약서의 복무 조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“을”은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,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“갑”은 인권 센터 등 관계 부서의 직권 조사를 명하거나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.

**제7조(협약 중단·해지)** “을”이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8조(복무협약서 교부)** “갑”은 복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“을”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복무협약서를 교부해야 한다. 또한, “갑”은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교부하며, 교과목 담당 교수는 협약 내용에 따라 “을”의 복무관리 및 제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.

2020. 3.

(대학(원)장 또는 기관장) 소속대학(원) : 자연과학대학  
직위 : 자연과학 대학(원)장  
성명 : 이준호 (서명)

(강의조교(작은스승)) 소속대학(원) : 자연과학대학 (학과: 수리과학부)  
학번 : 2020-00000  
성명 : 홍길동 (서명)

교과목 담당 교수 : 소속 (수리과학부) 직위 (교수) 성명 (김OO) (인)